

建築法解説

건설부 건축과장 박 우 하

居室의 반자높이,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

令第13條 (居室의 반자높이)

- ① 居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 ② 一般學校의 教室로서 그 바닥面積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3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 ③ 劇場, 映画館, 演藝場, 公會堂 또는 集會場의 客席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4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機械換氣裝置의 設置를 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 ④ 前各項의 반자높이는 室의 바닥面부터 測定하되 同一한 室로 반자높이가 다른 部分이 있을 때에는 그 平均 높이로 한다.

第1項은 一般建築物의 第2, 第3項은 特殊建築物의 天井의 높이에 關한 規定이고 第4項은 各項의 天井의 높이의 算定方法에 關한 規定이다. 「그 平均의 높이」는 室의 容積을 바닥面積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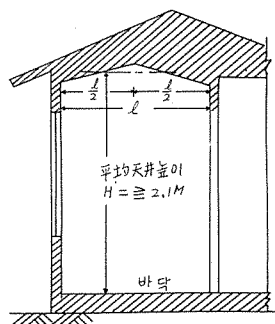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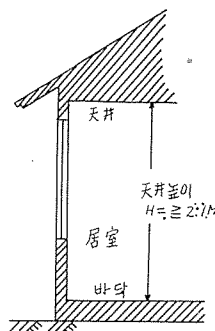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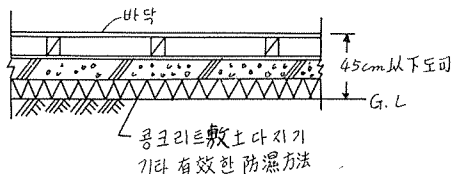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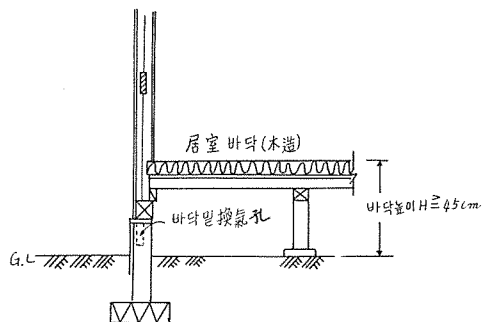
그림 (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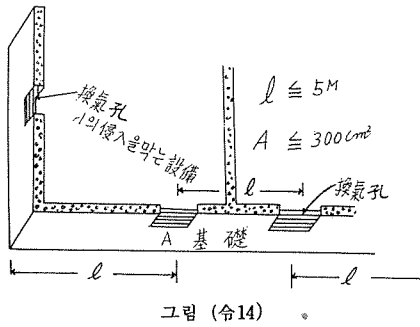
令第14條 (居室의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

最下層 居室의 바닥이 木造인 境遇의 바닥높이 및 防濕方法은 다음 各號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敷土다지기 기타 防濕上 有效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1. 바닥높이는 直下의 地面부터 그 바닥上面까지 45센치미터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2. 外壁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壁의 길이 5미터以下마다 面積300平方センチ미터以上の 換氣孔을 만들고 위의 侵入을 막는 設備를 하여야 한다.

最下層에 있는 居室로서 바닥이 木造인때의 規定이다. 換氣孔을 만들고, 위의 侵入을 막는 設備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階段에 關한 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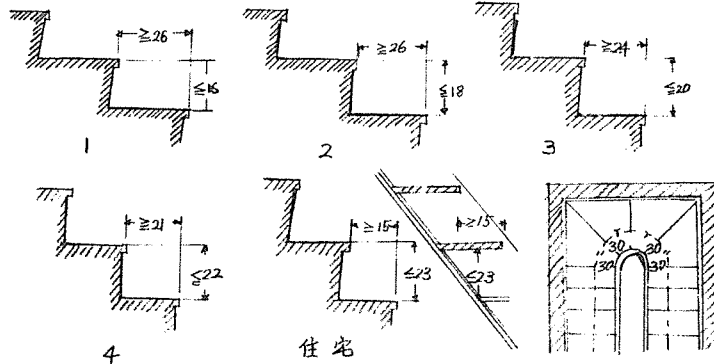
令第15條 (階段 및 階段站의 幅과 높이 및 디딤바닥 치수)

① 階段 및 階段站과 段높이 및 디딤바닥의 치수는 다음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屋外階段의 幅은 60센티미터 以上, 住宅의 階段 (共同住宅의 共用階段을 除外한다)의 段높이는 23센티미터 以下 디딤바닥은 15센티미터 以上으로 할 수 있다.

階段의 種類	階段 및 그 階段 站의 幅 (單位센티미터)	段 高 이 (單位센티미터)	디딤바닥의 넓이 (單位센티미터)
(1) 國民學校에서의 兒童用階段	140以上	16以下	26以上
(2) 中學校나 高等學校에서의 學生用階段 또는 百貨店, 劇場, 映 画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이나 集會場에서의 客用階段	140以上	18以下	26以上
(3) 直上層의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00平方미터를 넘은 地 上層 또는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를 넘은 地 下層의 階段	120以上	20以下	24以上
(4) 其他의 階段	75以上	22以下	21以上

② 도름階段의 部分에 있어서 段넓이의 치수는 디딤바닥의 좁은側의 端部부터 30센티미터의 位 置에서 測定한다.

이 條文에서는 各種類別에 따른 建築物의 階段의 階 段站의 幅, 段높이 디딤바닥의 넓이와, 도름階段의 段넓이의 測定方法을 揭記하고 있다.



T: 도름階段의 디딤바닥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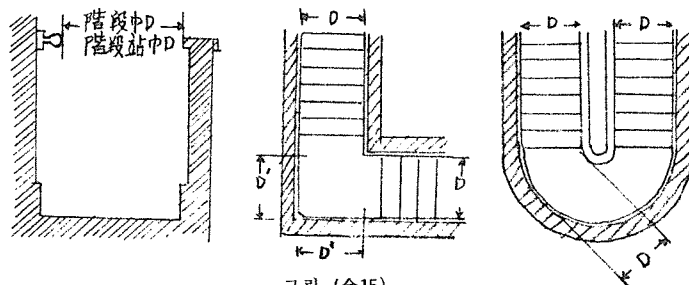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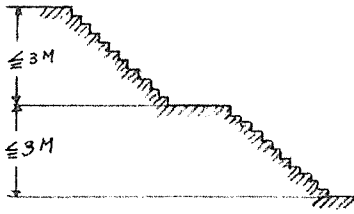
그림 (令15)

令第16條 (階段站의 位置 및 段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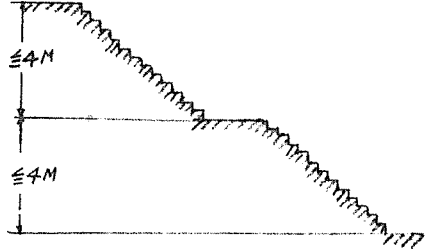
① 前條第1項의 (1) 또는 (2)에 該當하는 階段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超過하는 것은 높이 3미터以內마다, 其他階段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以內마다 階段站을 設置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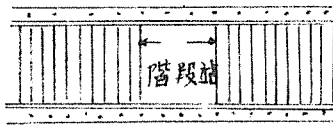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되는 끝은 階段의 階段站의 段넓이는 1.2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1) (2)에 該當하는 階段



(1) (2) 以外에 있어서의 階段



階段站의 디딤 바닥幅 $\geq 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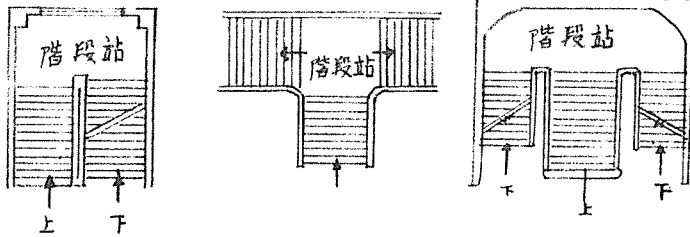


그림 (令16)

令第17條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

① 階段 및 階段站의 兩側壁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이나 이와 代置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欄干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階段의 幅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中間에 欄干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段높이가 15센치미터 以下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 以上の 것은 例外로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높이 1미터 以下の 階段의 部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欄干을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높이가 1미터 以下の 階段의 部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하여도 좋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 條文에는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으며 階段의 幅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段높이가 15센치미터 以下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 以上の 것을 例外로 하고는 반듯이 中間에

令第18條 (階段에 代置되는 傾斜路)

① 階段에 代置되는 傾斜路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1. 勾配는 8分之1 以下로 한다.
2. 表面은 粗面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은 材料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② 前3條의 規定(段높이 및 디딤바닥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는 前項의 傾斜路에 이를 準用한다.

階段에 代置할수 있는 傾斜路의 規定으로서 勾配 및

미끄러지지 않은 材料로서 表面을 마감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19條 (特殊用途에 專用되는 階段)

令第15條乃至 令第17條의 規定은 昇降機械室用階段, 望樓用階段, 其他 特殊한 用途에 專用되는 階段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特殊用途에 專用되는 階段은 令第15條의 階段 및 階段站의 幅과 段높이 및 디딤바닥치수, 令第 16條의 階段站의 位置 및 段넓이, 令第17條의 階段 및 階段站의 欄干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여도 종도록 規定하고 있다.

便所에 關한 規定

法第20條 (便所)

- ① 下水道法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內의 便所는 水洗式으로 하여야 한다.
- ② 便所에서 排出하는 汚物을 前項의 下水道以外에 放流하고자 할 때는 衛生上支障이 없는 構造의 汚物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은 下水道法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內의 便所는 水洗式便所로 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2項은 前項의 下水道區域以外에 放流하고자 할 때에는 衛生上支障이 없는 構造(令24)의 汚物淨化槽를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終末處理場”이라 함은 下水를 最終적으로 處理하여 河川, 바다 기타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爲한 下水道の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令第20條 (便所의 採光 및 換氣)

便所에는 採光 및 換氣를 위하여 直接 外氣에 接하는 窓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水洗式便所로서 이에 代置되는 設備를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便所는 水洗式便所로 하는外에는 採光 및 換氣를 위하여 直接 外氣에 接하는 窓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21條 (除去式便所의 構造)

除去式便所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 1. 小便器부터의 污水管, 便槽 및 그 上口的 周

圍는 耐水材料로 만들고 浸透質의 耐水材로 만들 때에는 防水물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類似한 有效防水措置로서 漏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便所의 바닥밑은 耐水材料로 다른 部分과 區劃하여야 한다.
- 3. 除去用開口部는 直接道路에 面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下端을 地盤面上 10센치미터 以上으로 하고, 이에 密閉할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 4. 除去用開口部의 前方 및 左右 各 30센치미터까지의 部分의 地盤面을 콘크리트 敷土다지기, 기타 이와 類似한 材料로 覆蓋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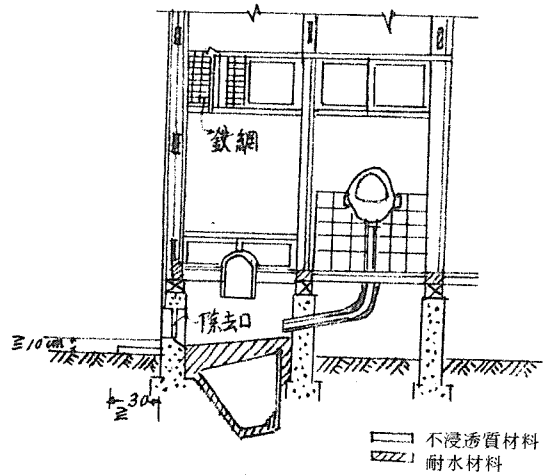


그림 (令21)

令第22條 (特殊建築物 및 特定區域의 便所의 構造)

①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學校, 病院,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公會堂, 集會場, 百貨店, 호텔, 旅館, 寄宿舍, 停車場,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指定하는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便所 및 公衆便所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 1. 不浸透質의 便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 2. 小便器부터 便槽까지는 不浸透質의 污水管으로 連結하여야 한다.
- 3. 水洗便所以外의 便所(便所의 出入口를 密閉할 수 있는 門이 없을 때에는 大便所)의 窓, 기타 換氣를 爲한 開口部에는 파리를 막는 金屬網을 씌워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前項의 用途의 建築物 또는 條例로 指定하는 區域內의 建築物의 除去式便所 便槽를 第23條의 改良便槽 또는 第24條의 水洗式便所로 하는 것이 衛生上 必要하고 또한 이를 有效하게 維持할 수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條例로 이를 改良便槽 또는 水洗式便所로 하여야 하는 內容의 規定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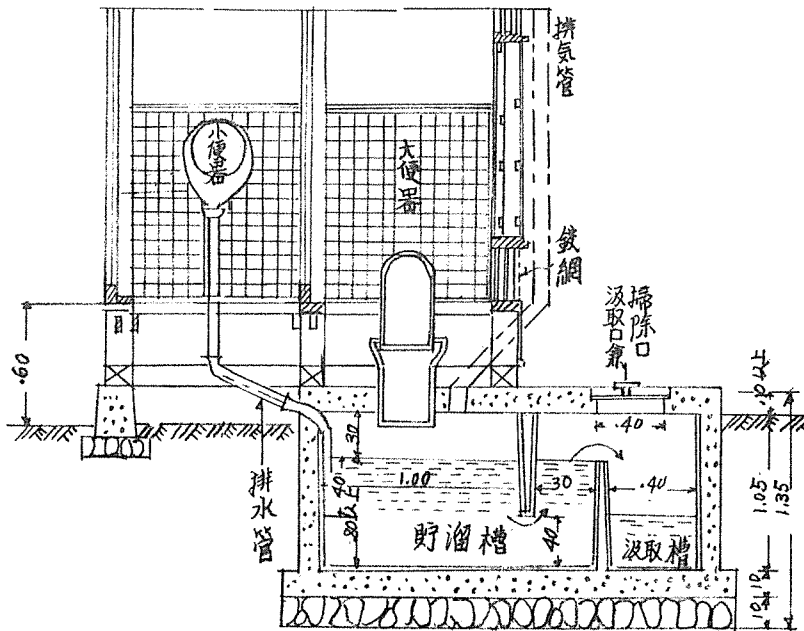
特殊建築物 및 特定區域의 便所의 構造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令第23條 (改良便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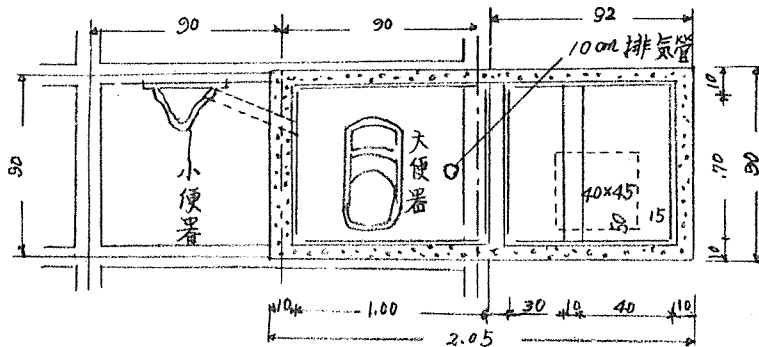
改良便槽는 다음의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特殊한 構造로서 市長, 郡守가 이와 同等 以上으로 衛生上 效果가 있다고 認定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

1. 便槽는 貯溜槽 및 排泄槽를 組合한 構造로 하여야 한다.
2. 便槽의 天井, 바닥, 周圍 및 隔壁은 耐水材料로 만들고 防水물탈로 塗裝하거나 기타 有



斷面圖



平面圖

그림 (令23)

효한 防水措置를 하여야 한다.

3. 貯溜槽는 2個槽以上으로 區分하고, 汚水를 貯溜하는 部分의 깊이는 0.8미터 以上, 容積은 0.75立方미터 以上으로서 100일 以上 貯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貯溜槽에는 掃除하기에 必要한 크기의 開口部를 設置하고 이를 密閉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小便器부터의 汚水管은 그의 先端을 貯溜槽의 汚水面下 0.4미터 以上の 位置에 插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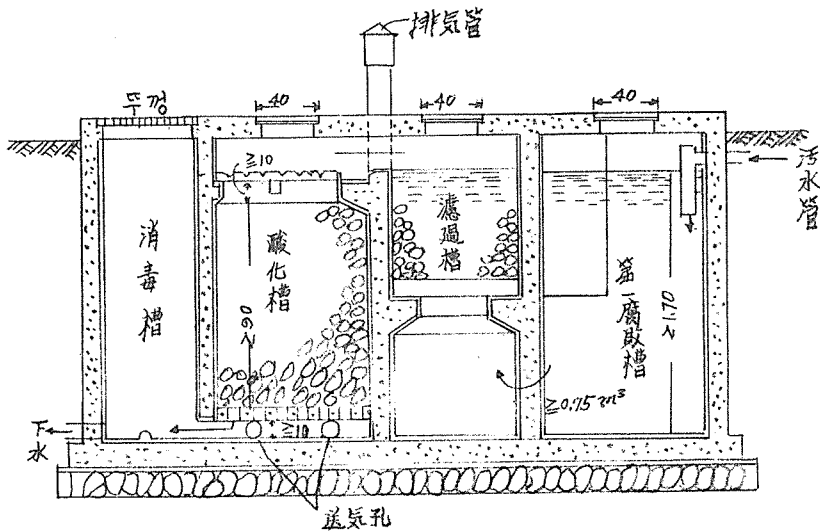
令第24條 (水洗式便所의 汚物淨化槽)

① 法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안에서 同一建築物內의 便所 使用對象 人員이 50人을 超過하는 建物에는 淨化施設을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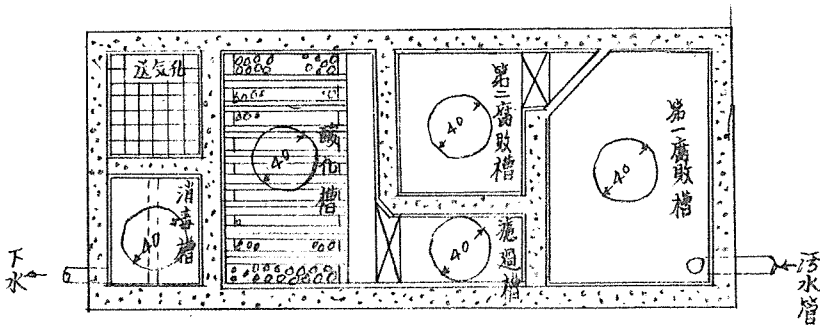
設한 水洗式便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法第20條第2項에 規定하는 汚物淨化槽는 汚物을 衛生上支障이 없을 程度로 淨化하여 放流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에 定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特殊構造로서 市長, 郡守가 이의 同等以上으로 淨化할 수 있다고 認定한 것은 例外로 한다.

1. 汚物淨化槽는 腐敗槽, 酸化槽 및 消毒槽를 차례로 組合한 構造로 하여야 한다.
2. 汚物淨化槽의 天井, 바닥, 周壁 및 隔壁은 耐水材料로 만들고 防水몰탈로 塗裝하거나 기타 有效한 防水措置를 하여야 한다.
3. 腐敗槽, 酸化槽 및 消毒槽에는 各各 안지름 40센치미터 以上の 망홀을 設置하고 그위에 이를 密閉할 수 있는 耐水材料 또는 鑄鐵製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斷面圖



平面圖

그림 (令24)

4. 腐敗槽는 沈澱分離槽 및 豫備濾過槽를 組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腐敗槽의 汚水를 貯溜하는 部分의 깊이는 1.2미터 以上으로 하고 그의 容積은 當該水洗式便所의 使用人員 15人分까지는 0.75立方미터 以上으로 하고, 使用人員의 增加에 比例하여 이를 增加하여야 한다.
6. 酸化槽는 散布濾過床式으로 하고 排氣管 및 送氣口를 設置하거나 기타 必要한 通氣設備을 하여야 한다.
7. 酸化槽의 散水漏斗의 下面과 碎石層의 上面과의 距離는 10센치미터 以上, 碎石層의 두께는 90센치미터 以上, 碎石層의 體積은 腐敗槽의 汚水를 貯溜하는 部分의 容積의 2分の1 以上, 碎石밭이의 下面과 通風口와의 距離는 10센치미터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令第25條 (漏水檢査)

第23條의 改良便槽 및 前條의 汚物淨化槽는 滿水하여 24時間以上 漏水하지 아니하는 것을 確認하여야 한다.

改良便槽 및 汚物淨化槽는 漏水되지 아니하도록 試驗에 依해서 確認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26條 (便所와 우물과의 距離)

除去式便所의 便槽는 우물부터 10미터 以上 떨어져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地盤面下 3미터 以上 埋設한 閉鎖式우물로서 그의 導水管이 不浸透質로 만들어졌거나 導水管에 안지름 25센치미터 以下의 外管이 있어 導水管 및 外管이 모두 不浸透質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3미터 以上 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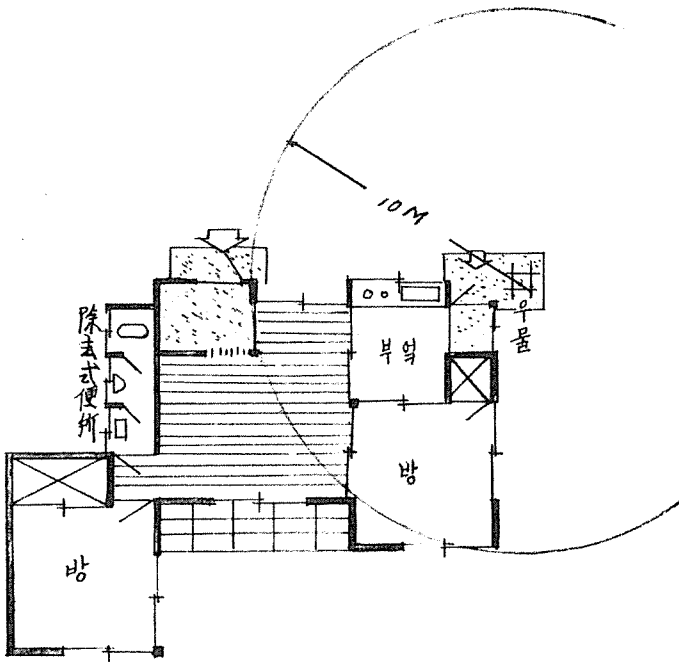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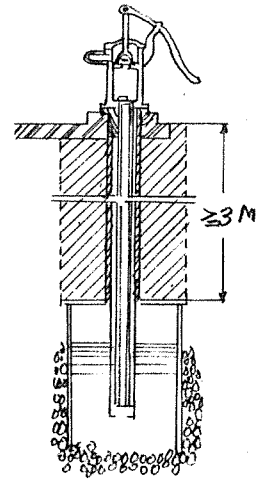


그림 A (令26)



閉鎖式 우물의 一般의 構造

그림 B (令26)

建築設備에 關한 規定

法第21條 (避雷設備)

높이 20미터 以上인 建築物에는 避雷設備를 하여야 한다.

建築物의 높이는 (令6. 5. (나))의 規定에 依해서

建築物의 屋上部分의 水平投影面積에 不拘하고 地盤面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避雷設備는 建築物의 높이 20미터를 超過하는 部分을 雷擊으로 부터 保護될수 있도록 設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法第22條 (昇降機)

建築物에 設置하는 昇降機는 安全한 構造로 하여야 하며 그 昇降機의 周壁 및 開口部는 防火上 支障이 없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昇降機 自体는 機能上 安全한 構造이어야 하며 그 周壁 및 開口部는 建築物의 防火上 支障이 없는 構造로 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22條의 2 (駐車場設置)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の 建築物을 新築, 改築(一部의 改築을 除外한다) 또는 再築을 하고자 할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建築物을 増築하고자 할 때에는 그 増築하는 部分과 既存建築物과의 延面積의 合計가 前段에 規定하는 規模以上인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前項의 規定을 適用할 行政區域과 駐車場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築主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以上の 建築物을 新築, 改築, 再築하고자 할 때와, 建築物을 増築하고자 할 때 増築하는 部分과 既存建物과의 延面積의 合計가 大統領令으로 規模 以上인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適用區域과 駐車場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4條 (駐車場設置基準)

- ① 人口 10萬 以上の 都市의 行政區域 안에서 延面積 2,0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法第22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 建築物 또는 그 垜地內에 다음 基準에 依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市場,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用의 專用駐車場이 있음을 認定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延面積이 2,000平方미터 以上 2,400 平方미터 未滿인 때에는 6台 以上을 駐車시킬 수 있는 駐車場.
- 2. 延面積이 2400平方미터를 超過할 때에는 超過하는 每 500平方미터마다 1台의 比率로 加算한 駐車場.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하는 駐車場의 駐車部分은 駐車台數 1台에 對하여 幅 2.5미터 以上, 길이 6미터 以上으로 하고 自動車가 有效하게 出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③ 市長, 郡守는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에 있어서 第1項 各號의 基準을 適用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建築物 및 駐車場의 規模를 따로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法第22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駐車場設置를 하여야 할 行政區域은 人口 10萬 以上の 都市의 行政區域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建築物로서는 延面積이 2,000 平方미터 以上일 때에 駐車場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고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用의 專用駐車場이 있음이 認定될 때에는 例外로 되어 있다.

- a. 延面積이 2,000m²~2,400m²일 때 6台
- b. 延面積이 2,400m²를 超過할 때에는 超過하는 每 500m²마다 1台의 比率로 加算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며, 駐車場의 駐車部分은 駐車台數 1台에 對하여 幅 2.5미터 以上, 길이 6미터 以上으로 하고 自動車가 有效하게 出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實際駐車面積은 1台當 15平方미터이나 出入하는 通路面積까지 合算하면 駐車方法에 따라 다르나 20平方미터 乃至 30平方미터 内外가 된다. 地下層이나 一層部分에 駐車場을 配置하고자 할 때에는 기둥配置等を 充分히 考慮하여 駐車場의 面積을 計算하여야 할 것이다.

駐車方法은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 a. 平行駐車
- b. 斜行駐車
- c. 45°斜角駐車
- d. 60°斜角駐車
- e. 直角駐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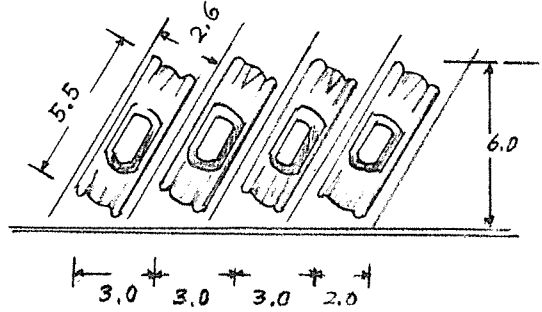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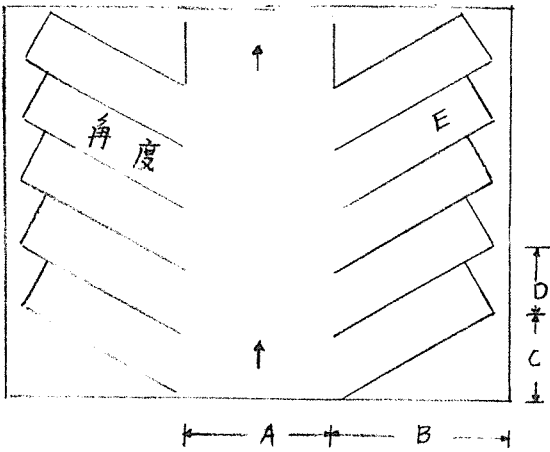
第3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에 있어서는 第1項 各號의 基準을 適用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될때는 建築物 및 駐車場의 規模를 規則으로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駐車方法에 依한 1台當必要한 駐車面積은 다음 表와 같다. (建設部制定 都市計劃樹立基準)

路上駐車場(On Street Park)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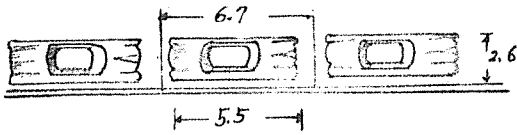
駐車形式	1台當 所要面積	A	B	C	D	E
平行	27.59m ²	M 3.36	M 2.24	M 6.71	M —	M 2.44
30°	31.12	3.51	4.58	6.53	4.27	2.44
45°	27.78	3.66	5.19	5.19	3.45	2.44
60°	25.64	5.49	5.49	3.17	2.81	2.44
直角	21.18	7.02	5.19	—	2.44	2.44

路上駐車區劃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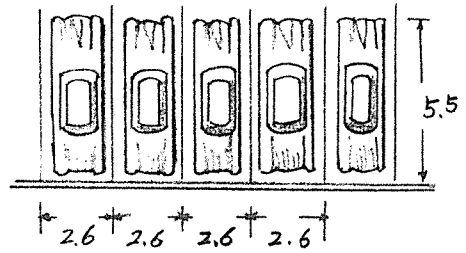


60°斜角駐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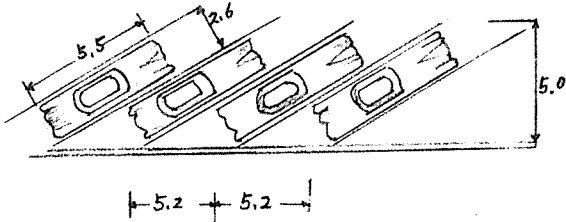
駐車區劃配置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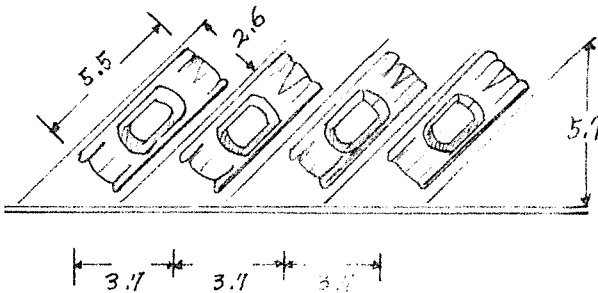
平行駐車



直角駐車



30°斜行駐車



45°斜角駐車

法第22條의 3 (地下層의 設置)

-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 ② 前項의 規定을 適用할 行政區域과 地下層의 規模, 構造, 設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 및 規模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하고 適用區域과 地下層의 規模, 構造, 設備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6條 (地下層設置基準)

- ① 法第22條의 3의 規定에 依하여 人口 20萬 以上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하는 都市의 行政區域內에서 地上層의 延面積 2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法第22條의 3에 規定에 依하여 다음 基準에 依

한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倉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과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의 地下層에 같은 施設 또는 自然條件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에는 그 延面積의 10분의 1 以上の 地下層.
2. 學校,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百貨店, 市場等 大衆의 用에 供하는 特殊建築物과 工場에 對하여는 収用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1人當 0.25平方미터 以上の 地下層.
- ② 地下層의 主要構造部는 第83條에 規定한 耐火構造로 하고 地下層의 面積의 合計가 1,000平方미터 以上일 때에는 地下 各層으로부터 外部로 連結하는 直通避難階段을 1個所以上 設置하고 甲種防火門으로 區劃하여야 한다.
- ③ 市長,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區域內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上層의 延面積이 6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에도 地下層을 設置하게 할 수 있다.

第1項에서는 人口 20萬以上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公告하는 都市의 行政區域 안에서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하며, 倉庫, 車庫, 火葬場, 屠殺場,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과 市長, 郡守가 隣近에 當該建築物의 地下層에 같은 施設 또는 自然條件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좋도록 되어 있다. 이는 防空關係에 對備해서 地下層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a.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

에는 그 延面積의 10분의 1 以上の 地下層.

(b에 揭記한 建築物을 除外한 建築物)

- b. 學校,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百貨店, 市場等 大衆의 用에 供하는 特殊建築物과 工場에 對하여는 収用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1人當 0.25平方미터 以上 地下層.

第2項에서는 地下層의 主要構造部는 第83條에 規定한 耐火構造로 하여야 하며, 地下層의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 以上일 때에는 地下各層으로 부터 外部로 連結하는 直通避難階段을 1個年以上 設置하고 甲種防火門으로 區劃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3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第1項의 區域 안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는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 以下인 6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에도 地下層을 設置하게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05條 (國旗揭揚台의 設置等)

① 商業地域內에 있는 幅員 15미터 以上の 道路에 面하여 2層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上으로 부터 8미터 支點의 壁面에 높이 2미터의 國旗揭揚台를 道路에 面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② 3層以上の 建築物 또는 延面積 1,500平方미터 以上の 建築物을 新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에는 同建築物의 1層에 있는 出入口, 管理事務所, 守衛室이나 그 附近에 建設部長官의 協議를 얻어 遞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郵便物受取函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 條文에서는 都市美觀上の 見地서 一定한 位置에 國旗揭揚台, 出入口, 管理事務所, 守衛室, 郵便物受取函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1971. 3. 1 ~ 3. 31

방첩 및 승공사상 양양기간

『북괴는 노린다

분열과 혼란을』